

대법원 2024. 8. 29 선고 2024다25048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8. 29 선고 2024다250484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3나67125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3. 10. 31 선고 2022가소17638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상고인

A

피고, 상고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

판결선고 2024. 8. 29.

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. 5. 22. 선고 2023나67125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오석준, 대법관 이흥구, 대법관 엄상필, 주 심 대법관 이숙연

별지